

고 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-241호

삼호가든3차주택재건축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(제1차)인가(안)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8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7-12호(2017.02.10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삼호가든맨션 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. 10. 25.

서 초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2-8 외 2필지

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31,228.8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대표 윤병기)

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55(서초동, 중앙서초프라자 305호)

4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: 2018.10.12.

5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1) 대지면적 : 30,983.6㎡

2) 지상35층/지하4층, 아파트6개동(848세대) 및 부대·복리시설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(상가 해당없음)

공급대상	주택 규모별 공급세대수				
	계	60㎡미만	85㎡미만	85㎡이상~ 114㎡미만	114㎡이상
계	848	274	403	49	122
토지등소유자	506	95	246	48	117
일반분양	210	50	154	1	5
보류지	4	1	3	-	-
재건축소형(임대)	128	128	-	-	-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

1) 신 설 : 도로 245.2㎡

2) 폐 지 : 해당없음

라. 기존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해당없음(기존건축물 철거완료)

6.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02-2155-7345)에 비치하고
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